

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(= ⑬)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가.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 계산

⑥ 투자 자산 종류	⑦ 총 투자 예정 금액	⑧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	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				⑬ 누적 투자 대상금액 (⑧과 ⑫ 중 큰 금액)	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	⑮ 투자금액 (⑬ - ⑭)
			⑨ 해당과세연도말 총투자 누적액	⑩ 총 투자 예정비	⑪ 진행률 (⑨/⑩)	⑫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(⑦×⑪)			
계									

나. 공제세액 계산

법인 구분	⑯ 투자금액 (= ⑮)	⑰ 공제율	⑱ 공제세액 (= ⑯×⑰)
중소기업		10%	
중견기업		7%	
일반기업		5%	

다. 상시근로자 수 계산

구 분	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⑲ 합계	⑳ 개월수	㉑ 상시 근로자수 (= ⑲÷ ⑳)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
직전 과세연도															

④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

㉒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(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)의 상시근로자 수	
㉓ 상시근로자 수가 ㉒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
㉔ 상시근로자 수가 ㉒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	
㉕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[(㉒-㉓) + (㉓-㉔)]	
㉖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(㉕×1천만원)	
㉗ 세액공제를 받은 뒤 투자자산을 3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이자 상당액 계산금액	
㉘ 납부 세액(㉖+ ㉗)	

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 및 구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 9제9항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"⑥ 투자자산 종류란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에 해당하는 자산을 적고, "⑧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"란은 해당 자산의 투자를 개시한 이후 지출한 금액의 누적액을 적습니다.
2. "⑪ 진행률"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에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.
3. "⑬ 누적투자 대상금액"란은 ⑧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⑫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, "⑭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"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.
4. "⑮ 투자금액"란은 "⑯ 투자금액"란에 옮겨 적습니다.
5. "⑰ 합계"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.
6. "⑳ 개월수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.